

자산보관 • 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•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
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8963/0991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- 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 삼성KODEX운송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[주식]
- 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 증권[주식] 집합투자기구
- 다. 보관 • 관리기간: 2012.04.25 - 2012.12.31
- 라. 집합투자업자: 삼성자산운용(주)
- 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신한금융투자, 유진투자증권, 메리츠종합금융증권, 현대증권, 동양증권, SK증권, KTB투자증권

2.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12.06.29	제12조(투자신탁회계기간)	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1년간으로 한다. 다만,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	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1년간으로 한다. 다만, 신탁계약 해지후에 도래하는 회계기간은 다음의 각호에 기간으로 하며,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

				년 4월 25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
2012.06.29	제39조(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등)	①생략 ②제1항에서 “비용” 이라는 용어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. 1.~4. 생략 5. 수익자총회 관련 비용 6.~11 생략 추 가	①생략 ②제1항에서 “비용” 이라는 용어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. 1.~4. 생략 5.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.~11 생략 12. 추정 NAV 산출 등 한국거래소를 통한 투자신탁 관련 정보산출 비용	2. 제 1호의 회계기간 경과후의 회계기간 : 2013년 1월 1일부터 매 1년간
2012.06.29	제41조(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)	① 생략 1. 지급기준일: 1월, 4월, 7월, 10월, 10월 마지막일 및 회계기간 말일의 영업일	① 생략 1. 지급기준일: 1월, 4월, 7월, 10월, 10월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, 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	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변경일자	변경사유	성명	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	협회등록번호
2012.06.29	말소	김남기	-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삼성자산운	2109001159

			용 신탁회계팀 - 채권 2 팀 - 채권 1 팀 - ETF 운용팀	
2012.0 6. 29	신규	김남 의	-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학 사 - 삼성자산운 용 ETF 운용 1 팀	2110000109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·해임에 관한 사항

- 해당사항없음

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
- 부합함

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
- 적정함

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
- 해당사항없음

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
- 공정함

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
- 적정함

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
- 해당사항없음

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
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
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

- 해당사항없음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